

#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999. 1. 21  
기획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9년 1월 11일
- 회부일자 : 1999년 1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1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1999. 1. 21)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가. 제안이유

충청북도 조직과 인력의 축소개편에 따라 물품관리자의 관직을 재정비하고 '98정기재물조사 결과 시·도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행정자치부장관준칙(안)에 의거 불용품의 소요 조회 대상을 조정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조직개편으로 기구 및 물품관리자의 관직지정을 변경
  - 회계과 → 총무과,      회계과장 → 총무과장
  
- 불용품의 소요조회 대상조정
  - 동일 시·도 소요조회
  -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 10백만원 미만의 물품
  - ⇒ 동 취득가격 5백만원이상 10백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 동 응)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에 있어서 동일 시도내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 가격이 10백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물품취득 가격이 5백만원이상 10백만원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조정하였고 또한 일부조문중 도조직개편으로 물품관리의 부서명칭을 현실에 맞게 자구수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현행조문중 일부 불합리한 “직할시·도”를 “광역시·도”로 수정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도의 물품관리조례중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명칭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의 일부조문중 “직할시·도(시·군 포함)” ⇒ “광역시·도(시·군·자치구 포함)”로 자구수정 (안 제16조 제3항 제1호 - 제2호)

7. 심사결과 :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6인 참석, 6인 찬성으로 동조례 제16조 제3항 제1호-제2호중 “직할시·도(시·군 포함)”을 “광역시·도(시·군·자치구 포함)”으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도원안대로 의결

8. 소수의견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신·구조문 대비표
-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수정안 대비표